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2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이훈기·김정호·김태년

조인철 · 위성락 · 박민규

김성환 · 서영교 · 전현희

이병진 · 노종면 · 박희승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국방·통 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등 4개의 사 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

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상)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	
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u>.</u>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3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	
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	
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u>다만,</u>
<단서 신설>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u>는 제외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